

보도자료

2010년 3월 17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광혁과장(1650) 나. 시장조사과 이창희과장(2630)
다.라. 뉴미디어정책과 조영훈과장(2450) 마.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과장(2770)

2010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EBS)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 한국교육방송 고영진 이사(前 한국국제대학 총장)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10.2.16)함에 따라 보궐이사로 한건표(韓堅杓, 만53세)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함.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12.9.14.까지임

* 보궐이사 약력 : 첨부자료1

나. (주)에스비에스,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지상파방송 3사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건과 관련하여 방송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함

* 권고사항 : 첨부자료2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결합상품 규제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운영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할인 및 수익배분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결합상품 규제 방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결합상품의 방송·통신 할인율은 사업자 자율로 정하되, 결합상품 판매수익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약관요금 비율대로 회계 처리하도록 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강원방송과 (주)신라케이블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강원방송과 (주)신라케이블방송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한 결과

<위반내용>

(주)강원방송	○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담보를 해소하도록 한 조건을 불이행
(주)신라케이블방송	○ 조선아이앤씨와 체결한 경영권 매각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상환하고 주권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재허가 조건을 불이행

- (주)강원방송과 (주)신라케이블방송에 대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시정하도록 의결함

<시정명령 내용>

(주)강원방송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신라케이블방송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인 '조선아이앤씨와 체결한 경영권 매각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상환하고 주권을 반환' 받고 그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사항을 위반한 482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한 결과,
 -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 2010. 4. 30일까지 시정하도록 의결함. 끝.

[첨부1]

EBS 보궐이사 이력사항



○ 성 명 : 한 건 표 (韓堅杓)

○ 생년월일 : 1956. 11. 16. (만 53 세)

○ 출생지 : 충남 서산

○ 학 력

‘75년 대전고등학교 졸

‘80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

○ 주요경력

‘09년 4월 ~ 현재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08년 3월 변호사 개업

‘06년 ~ ‘08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금융조세조사2부장

‘05년 법무부 법무과장

‘03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률보좌관 겸 송무기획단장

‘89년 ~ ‘02년 검사, 부부장검사(서울지검, 마산지검, 대전지검, 춘천지검)

‘89년 2월 사법연수원 수료(18기)

‘86년 9월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첨부2]

지상파방송 3사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1.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가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방송3사간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방송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한다.
3. 남아공월드컵 개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남아공월드컵이 공동중계 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